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1165-01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 청년통계



▶▶▶▶▶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청년통계



# 발 간 사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중요한 지역통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일자리인식실태 조사를 포함한 조사통계 7종의 표준매뉴얼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통계작성 비용의 절감과 행정자료의 활용 필요성 등으로 인해 높아져가는 행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통계 개발에 대한 내용도 담아 표준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지자체 통계 작성 담당자가 처음으로 통계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 전단계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록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통계 개발 업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매뉴얼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 및 담당자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매뉴얼을 발간하는 데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통계청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 매뉴얼이 지역통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통계청장 강 신 욱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지역통계 표준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	전화번호
지역통계총괄과	042) 481-3608~9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청년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 개발목적

- 청년통계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계 작성기관에서 지역 간 비교·분석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개발 과정 및 절차

- 표준매뉴얼 개발 추진방안 수립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관간 역할, 개발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통계 시범조사지역\* 선정
- \* 시범지역 :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 매뉴얼 개발 협의체(TF) 구성·운영 및 통계표 개발
  - 협의체는 통계청(본청, 지방청) 담당자 및 시범지역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통계표는 공통항목에 기반한 '기본통계표'와 지자체 특성항목을 추가한 '자율통계표'로 구분 설계



## 행정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실무 TF 구성

- ◎ (주관 2명) 주관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매뉴얼 개발 총괄팀장, 담당주무관
- ◎ (필수 5명) 지원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1명), 시범지역 지자체(2명), 행정자료관리과(1명), 지역통계총괄과 사업담당(1명)
- ◎ (자문) 지역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 (개최 이력) 1차('18.2.23.), 2차('18.3.2.), 소규모 회의(수시 운영)

●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자료 항목별 통계 작성에 필요한 내역을 분석한 후 입수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자료 보유기관과 협의
- 입수협의 완료 후 통계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문서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의 송·수신시 보안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

● 통계표 작성

- 시험작성 결과 문제점 보완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작성

● 표준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시범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기획, 생산, 공표단계 등 표준프로세스를 매뉴얼로 작성 및 배포

 주요 검토사항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입수자료, 연계 및 가공, 산출자료 등의 정제 및 검토가 그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각 과정별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유입자료의 품질, 자료처리의 품질, 통계 산출물의 품질
- 통계는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른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성 기준 등의 명확한 적시 필요

 시범작성 한계점

- 표준매뉴얼 작성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2개 지자체 중, 충청남도도 행안부 예산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는 통계청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작성에는 자체예산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 시범지역 예시 |

시범 지역	작성기준	지원인력*	예산규모(천원)	공표범위
충청남도	인구총조사 기준('17.11.1.) 만 15세~39세 충청남도 인구	2명	30,889	시군단위
전라남도 광양시	주민등록 기준('17.12.31.) 만 19세~39세 광양시 인구	2명	29,800	시단위

\* 지원인력 : 자료 내검요원



## 활용시 유의사항

- 기본통계표로 구성된 공통통계표(23개)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 기본통계표 중 선택통계표는 정책 수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
- 자율통계표는 지역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용성에 따라 추가 구성 및 활용 가능
- 시의성 있는 통계작성 결과의 정책활용을 위해 계획수립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Contents



발간사 .....	03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	04
청년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	05

## I . 통계 개요 11

1. 행정통계 개요 .....	12
2. 청년통계 개요 .....	15

## II . 통계작성 기획 17

1. 기본계획 수립 .....	18
2. 통계표 설계 .....	21
3. 통계작성 승인 신청 .....	28
4.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37

## III . 통계표 작성 47

1. 행정자료 연계 .....	48
2. 조사통계 활용 .....	53
3. 기타 자료 활용 .....	58

<b>IV.</b>	<b>결과 분석</b>	<b>61</b>
<b>V.</b>	<b>자료공표 및 관리</b>	<b>67</b>
	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68
	2. 개인정보 보호	69
<b>VI.</b>	<b>부록</b>	<b>71</b>
	1. 통계표 설명서	72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12
	3. 개발 계획안	125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133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청년통계





PART

I

# 통계 개요

행정통계 개요 12

청년통계 개요 15



## 1

## 통계 개요



## 제 1 절

## 행정통계 개요



## 행정통계 일반 현황

- 개념 : 통계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주된 원천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거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을 통해 생성한 자료 및 이를 집계하여 생산한 것
-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비교

구분	통계조사자료		행정자료
	전수조사*	표본조사**	
포괄범위	모집단 전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목표 모집단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
내용	광범위한 자료	심층·분석 주제에 적합	행정목적에 따라 제한적
개념/정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행정적 필요성에 따름
품질관리	오차 최소화 설계 가능	상대적 저비용	주요항목 외에는 관리소홀
비용	고비용	상대적 저렴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주기	5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월간 또는 연간 (행정프로그램에 따라 좌우)
시의성	조사 종료 1년후 자료사용 가능	정기조사는 몇 주, 임시조사는 몇 달 내 결과 산출	자료입수 시기에 따라 월간, 분기 자료생산 가능
응답부담	전국민, 전체 가구 대상	대상자에게는 크나 평균적으로는 적음	추가 부담 없음

\* 전수조사란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 구성원 각각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는 단위 조사

\*\*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행정통계 개발의 한계점

- (행정자료 자체의 한계) 행정자료는 당초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 포괄범위 차이, 결측값 존재 등으로 표준화 작업 및 자료 정제 필요
- (원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 「통계법」에 행정자료 활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행정자료 제공에 미온적임
- (대용량 행정자료 처리·보완의 어려움) 입수한 대용량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애용하기 위해서는 결측값 보완, 자료 간 연계·통합 등 통계적 가공처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함
-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 곤란) 월별, 분기별 등 보다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최신행정자료의 입수주기 단축이 필요

- 행정통계 개발의 기대 효과

- (정책맞춤형 상세 통계 생산) 산업·직업 세부 분류별, 읍·면·동 등 소지역별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고, 세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데이터 생산 가능
- (비용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기존의 조사통계 또는 새로운 통계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통계조사를 방지하여 통계작성 비용 절감과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이 경감
- (통계정확성 제고) 통계작성에 보다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 결합 등을 통하여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행정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통계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조사통계의 정확성도 제고 가능





## 행정통계 작성 흐름도

업무	추진 내용	주체
<b>통계작성 기획</b>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li> <li>- 추진배경, 작성개요, 소요예산 등</li> </ul>	지자체
↓		
통계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표 개발 및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li> </ul>	지자체 (대행기관)
↓		
통계작성 승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승인신청 자료 준비 및 의뢰</li> <li>- 통계 작성개요, 기획서, 결과표 등</li> </ul>	지자체
↓		
<b>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료 입수 가능 시기 및 내용 파악</li> <li>입수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료 입수</li> </ul>	지자체 (대행기관)
↓		
<b>통계표 작성 및 결과 공표</b>		
통계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료 연계</li> <li>조사통계 결과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li> <li>기타 자료 활용</li> </ul>	지자체 (대행기관)
↓		
통계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 분석</li> </ul>	지자체 (대행기관)
↓		
결과 공표 및 자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발간</li> <li>KOSIS,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표 게시</li> </ul>	지자체



## 제 2 절

## 청년통계 개요



## 일반현황

- 통계명 : 청년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통계
- 작성방법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
- 작성 및 공표주기 : 지속적으로 청년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3년 주기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발 배경
  - (통계기반 정책수립)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과 각 지역의 청년 유입정책 등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통계기반 기초자료 제공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인구, 복지, 일자리, 건강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년통계 현황

통 계 명	지 역	작성여부	최초년도	주 기
전주시 청년통계	전주	○	2016	2년
경기도 청년통계	경기	○	2017	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통계	세종	○	2017	1년
울산광역시 청년통계	울산	○	2017	2년
논산시 청년통계	논산	○	2017	2년
아산시 청년통계	아산	○	2017	2년
완주군 청년통계	완주	○	2017	3년
순천시 청년통계	순천	○	2017	2년
충청남도 청년통계	충남	○	2018	2년
광양시 청년통계	광양	○	2018	3년
고창군 청년통계	고창	○	2018	3년
김해시 청년통계	김해	○	2018	2년
창원시 청년통계	창원	○	2018	2년
경상북도 청년통계	경북	○	2018	2년



### ● 활용분야

- (정책 기초자료) 청년인구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 복지, 건강 등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여 불안한 사회 속에서 자립과 공존을 위한 정책수립



### ●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 ● 관련통계 현황

구분	청년패널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작성시작	2001년	2016년	2002년
작성주기	1년	1년	1년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작성대상	만 15~29세	만 15~39세	만 15~29세
공표범위	전국	6개 권역별*	전국

\* 6개 권역별 :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 ● 검토내용

-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통계이나, 전국단위 통계 공표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활용에 한계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활용에 한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심층적인 취업실태 파악에 용이하나, 전국단위 조사통계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활용에 한계

#### ● 검토결과

- 본 행정통계는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표를 영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PART

II

#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18

통계표 설계 21

통계작성 승인 신청 28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37



## 2

## 통계작성 기획



### 제 1 절

###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용어정의 등 통계작성 기본계획 수립
-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추진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계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청년통계 개요

- 작성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 작성기준 : 통계 작성년도 11월 1일 기준  
\* 인구총조사 기준에 따른 작성이기 때문이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권고
- 작성대상 : 정부 부처 기관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청년 연령이 상이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위인 만 15세~39세를 작성범위로 권고하나, 지자체 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 시범작성 지자체 : 충청남도(만 15세~39세), 광양(만 19세~39세)
- 작성주기 : 지속적인 청년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3년 주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성방법 :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행정자료 및 통계청 통계자료 가공
- 작성항목 :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별 항목

 업무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요 추진 업무	소요기간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서 수립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1~2개월
통계작성 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2~3개월
	통계작성 승인 신청	1~2개월
	행정자료 입수 가능성 및 내용 검토	2~3개월
	행정자료 입수	4~5개월
통계표 작성	행정자료 연계	3~4개월
	조사통계 활용	2~3개월
	기타 자료 활용	2~3개월
결과 분석 및 공표	결과보고서 작성	2~3개월
	결과 공표 및 자료제공	1개월

\* 기본통계표(공통, 선택) 활용으로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소요기간 단축 가능





## 소요예산 관리

-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 산출

## |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 |

구분		내용	검토내역	비고
작성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비용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 회의 여비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 간담회 비용	
통계 작성	행정자료입수 및 연계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0%(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간담회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분석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0%(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보고서 검토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보고서 검토협의 간담회	
	공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인쇄단가×인쇄부수

\* 통계청 및 외부기관등 용역의뢰의 경우는 연구비 등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 제 2 절 통계표 설계

### 주요내용

- 통계작성 목적 및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참고하여 통계표 설계
- 관련 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계표 개발

### 2-1 통계표 체계



#### 통계표 체계

- 통계표는 크게 기본통계표와 자율통계표로 구분
  - (기본통계표) 청년통계 작성 시 기본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통계표로, 모든 지역에서 필수적인 공통통계표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선택통계표로 구분
  - (자율통계표)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통계표



#### 기본통계표(공통/선택)

(단위 : 개)

영역(부문)	기본통계표		합계
	공통통계표	선택통계표	
계	21	51	72
인구·가구	10	16	26
경제	2	12	14
일자리	3	10	13
창업	2	3	5
복지	2	6	8
건강	2	4	6



## 2-2 통계표 구성



### 기본통계표

-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청년통계 기본통계표(선택통계표 포함)을 작성하여 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고
  - 청년의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분류지표 구성



### 지자체 자율통계표 개발

- 기본통계표 이외에 별도로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율통계표로 추가 가능
-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대내외 담당부서 등)
  - (2단계) 수요항목에 대응하는 자료원 발굴 및 확보가능성 검토
  - (3단계~끝)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기반한 자율통계표 개발 및 제공

#### | 수요조사 서식(예) |

소속(부서)	부문 명칭	작성 항목	용도	비고



적용 분류체계

- 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1. 시행)

대 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2-3 주요 통계표



## 공통 및 선택통계표 작성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인구·가구 (26)	인구 통계등록부	① 청년인구 및 비율	선택		
		② 성별 청년인구	공통		
		③ 연령별 청년인구	공통		
		④ 혼인상태별 청년인구	선택		
		⑤ 순이동 및 순이동률	선택		
	국내인구이동통계	⑥ 전입이동	공통		
		⑦ 전입사유	선택		
		⑧ 전입 전 거주지	공통		
		⑨ 전출이동	선택		
		⑩ 전출사유	선택		
		⑪ 전출인구의 전출지	선택		
		인구동향조사	⑫ 출산율	공통	
			⑬ 사망률	공통	
			⑭ 혼인율	공통	
			⑮ 이혼율	공통	
			가구 통계등록부	⑯ 청년가구 및 비율	선택
	⑰ 청년가구 유형	선택			
	⑱ 가구원수별 가구	공통			
	⑲ 거처종류별 가구	선택			
	⑳ 구성형태별 가구	선택			
	㉑ 청년 1인가구 비율	공통			
	㉒ 세대구성별 가구	선택			
	주민등록자료	㉓ 세대주 현황		선택	
		신혼부부통계		㉔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수	선택
				㉕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선택
	㉖ 혼인연령차별 신혼부부 수		선택		
경제 (14)	지역 사회조사	① 월평균 가구 소득	선택		
	주택소유통계	② 주택소유 청년인구 및 주택소유 비율	공통		
		③ 성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선택		
		④ 소유 지분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선택		
		⑤ 소유 건수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선택		
		⑥ 도내·외 소재지별 소유 주택수	선택		
		⑦ 단독/공동 소유별 주택수	공통		
		⑧ 주택 유형별 소유 주택수	선택		
		재산세자료	⑨ 소유 주택 가격	선택	
			⑩ 건축물 소유 건수별 청년인구	선택	
			⑪ 소유 건축물 가격	선택	
	⑫ 토지 소유		선택		
			⑬ 개별공시지가별 소유 토지	선택	
			⑭ 면적별 토지 소유	선택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일자리 (13)	지역별고용조사	① 청년 경제활동	공통
	구직신청자료	② 구직신청건수	공통
		③ 학력별 구직신청건수	선택
		④ 구직희망 고용형태	선택
		⑤ 구직희망 직종	선택
		⑥ 구직희망 직종 경력여부	선택
		⑦ 구직희망 근무지역	선택
		⑧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선택
		고용보험자료	⑨ 고용보험 피보험자
	⑩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선택
	⑪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선택
	⑫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선택
	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선택
창업 (6)	사업체기업체 통계등록부	① 성별 사업자등록	공통
		② 조직형태별 등록사업체	선택
		③ 사업자 등록상태	공통
		④ 업종별 등록 사업체	선택
		⑤ 업종별 신규 등록 사업체	선택
		⑥ 업종별 폐업 등록 사업체	선택
복지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공통
	장애인등록자료	② 장애인등록 인구	선택
		③ 장애 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공통
	국민·공무원·사학연금자료	④ 공적연금 가입인구	선택
		⑤ 가입자격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선택
		⑥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선택
	공무원연금자료	⑦ 가입기간별 공무원연금 가입인구	선택
사학연금자료	⑧ 가입기간별 사학연금 가입인구	선택	
건강 (6)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 적용인구	공통
		② 요양급여실적	공통
		③ 만성질환 진료인원	선택
		④ 만성질환 연간 및 1인당 진료비	선택
		⑤ 주요 암 진료인원	선택
		⑥ 주요 암 연간 및 1인당 진료비	선택



## 자율통계표 작성

## • 충청남도 사례

영역	자료명	자율통계표(11개)
인구 (3)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① 가구유형별 청년인구
		② 일반가구 청년인구
		③ 세대구성 청년인구
경제 (3)	지역 사회조사	① 월평균 가구 소득별 청년인구 분포
		② 월평균 저축수준별 청년가구 분포
		③ 식료품비 지출수준별 청년가구 분포
복지 (4)	공무원연금자료 사학연금자료	① 공무원 가입인구 현황
		② 성별 공무원 가입인구
		③ 사학연금 가입인구 현황
		④ 성별 사학연금 가입비율



● 광양시 사례

영역	자료명	자율통계표(31개)
혼인·출산 (4)	신혼부부통계	① 출산자녀수별 초혼 신혼부부 수
		② 맞벌이어부별 신혼부부 수
		③ 거처종류별 신혼부부 수
		④ 다문화 신혼부부 수
가구 (5)	인구주택총조사	① 거처종류별 1인 가구
		② 주거면적별 가구
	농림어업총조사	③ 농림어가 규모
		④ 전·겸업별 농림어가
		⑤ 경영주 경력기간별 농림어가
경제 (3)	자동차세자료	① 자동차 개인소유자
		② 자동차소유 물건수별 개인소유자
		③ 차종별 소유자동차수
일자리 (10)	직업훈련자료	① 연도별 실업자훈련생 수
		② 실업자훈련생 현황
		③ 연도별 실업자훈련생 고용보험 취득현황
	고용보험 모성보호자료	④ 연도별 모성보호 지급현황
		⑤ 종사산업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출산전후 휴가
		⑥ 종사산업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육아휴직
		⑦ 종사규모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출산전후 휴가
		⑧ 종사규모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육아휴직
		⑨ 근무직종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출산전후 휴가
		⑩ 근무직종별 모성보호 지급현황_육아휴직
복지 (4)	한부모가족 수급자료	① 연도별 한부모가족 수급자가구
		② 보장유형별 한부모가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수급자료	③ 연도별 차상위계층 수급자가구
		④ 보장유형별 차상위계층 수급자가구
건강 (4)	건강보험통계	① 연도별 의료기관 현황
		② 연도별 의료인력 현황
		③ 연도별 전문과목 의료기관 현황
		④ 연도별 전문과목 전문의인력 현황



### 제 3 절

## 통계작성 승인 신청

### 주요 내용

- 신규 통계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작성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변경승인 절차 등 참고



### 통계작성 승인 제도

- 통계작성 승인 제도의 취지
  - 유사·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변경사항은 모두 사전 통계작성 승인 요건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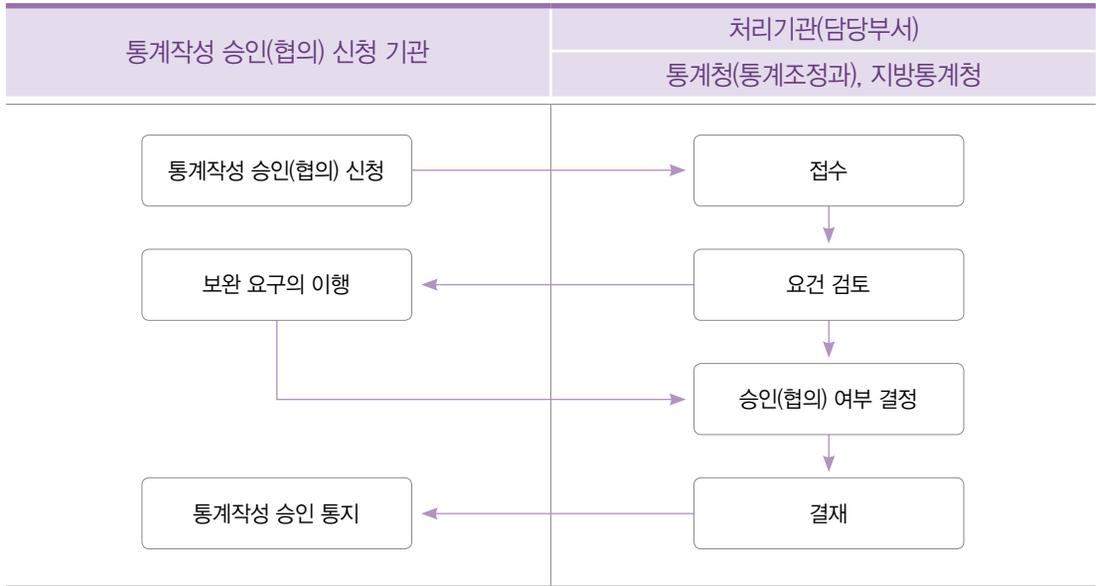


###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작성 승인 절차도

| 처 리 절 차 |



 통계작성 승인

● 승인 관련 부서

- 시도 단위 : 통계청 통계조정과
- 시군구 단위 : 지방청 지역통계과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해당 통계의 조사 등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 15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방법)** 신청서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방청에 제출 후 나라통계시스템 (<http://narastat.kr>)내에 있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 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식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계작성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 가공	이용통계명 : 자료명 :
⑩ 통계작성 체계 :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 표준분류 : , [ ] 그 밖의 분류 :
⑫ 통계결과 공표 :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

「통계법」 제18조 제1항 전단, 제20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를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 통계의 명칭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작성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기입
  - ②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 협의요청인 경우 통계작성의 근거 법률을 함께 기입
  - ④ 통계작성 사항 :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기입  
(예 : 사업체 일반사항 ㅇ개 항목, 고용 관련 ㅇ개 항목, 급여 관련 ㅇ개 항목 등)
  - ⑤ 통계작성 대상
    - 모집단 :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기입
    -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  
(예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기입
    - 대상 지역 :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기입
  -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
    - 가공 :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 하는 경우
  - ⑩ 통계작성 체계 :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기입  
(예 :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를 기입  
-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기입
  -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기입
  -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기입  
(예 :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 \* 첨부서류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에는 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표시하여야 함



작성예시 : ○○통계(통계명칭) 작성개요

1. 작성기관 : ○○부 ○○실 ○○과  
(전화번호 : 02-0000-0000,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2. 작성연혁
  - 2018. 12월 : 최초 작성
3. 통계의 종류 : 일반통계(지정통계, 일반통계 중 택1)
4.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일반통계        호)
5. 작성목적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시 ○○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개발을 하여 정책수립 기초 자료 제공
6. 작성대상 : 가구/개인(개인, 가구, 사업체, 기업체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입)
  - 범위(모집단) : 해당없음
  - 대상규모(표본크기)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5~39세 시민
  - 대상지역 : ○○시
7. 작성주기, 기준시점 및 조사(보고)기간
  - 조사주기 : 년
  - 대상기간(기준시점) : 2018. ##. ##. 0시 기준
8. 작성항목
  - 00개 부문 00개 항목  
-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기타
9. 작성방법
  - 작성형태 :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 중 택1)
  - 대상선정 : 기타(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중 택1)
10. 작성체계(자체, 용역, 위임·위탁 구분)
  -
11. 결과공표
  - 공표주기 : 년(작성주기와 다를 경우가 있음)
  - 공표시기 :
  - 공표방법 : 보도자료·인터넷게재, 보고서발간(보고서명)
  - 공표범위
    - 지역 : 시군구(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중 결과공표 최하위 단위표시)
    - 내용 : 청년의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기타
  - 통계결과 국제기구 제출여부(제출), 국제기구명(OECD)
12. 예산 : \_\_\_\_\_천원, 예산 지원기관 : ○○○
13. 기타 참고사항(주요용어,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등 기술)



##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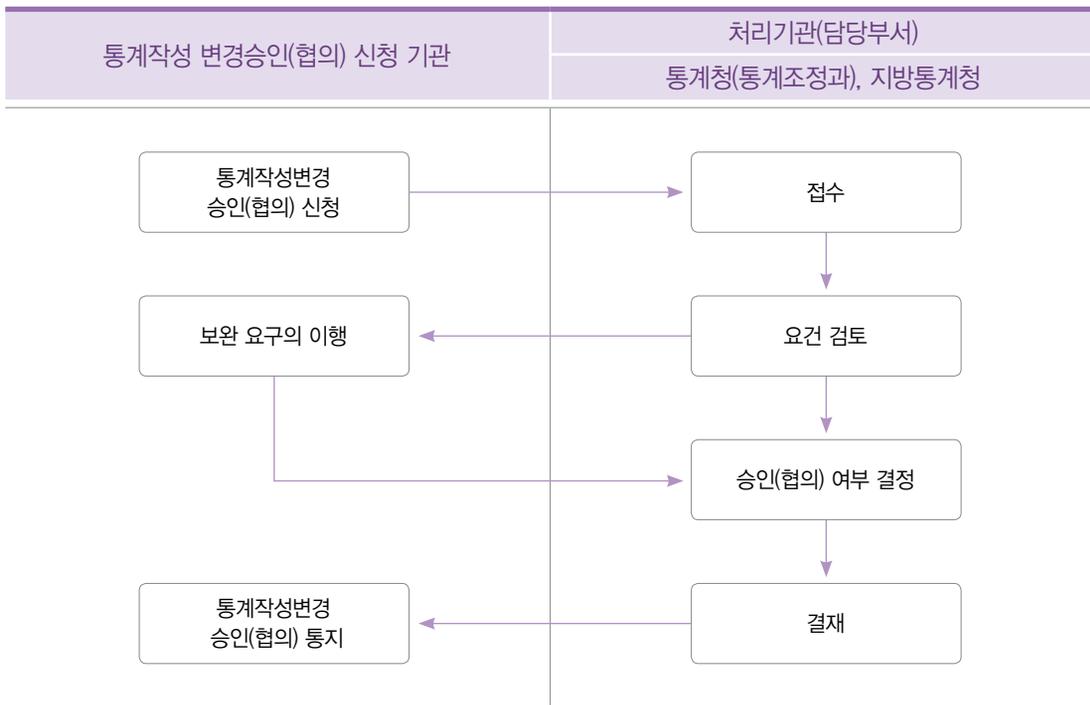
## ● 승인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및 협의를 거친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 승인내용 중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이 필수적임

## ●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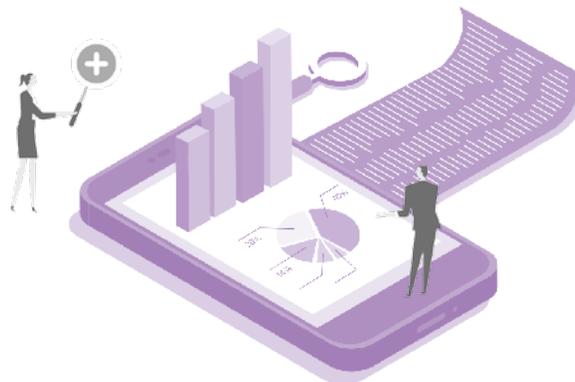
## | 처리절차 |



## ● 변경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받은 사항을 변경승인(협의)을 받으려면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통계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28조)

- (제출방법) 신청서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방청에 제출 후 나라통계시스템 (<http://narastat.kr>)내에 있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 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신청서류 심사
  - 통계의 변경승인(협의)에 준하여 처리
-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 변경승인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과 문서에 의한 통보 및 고시
    - 고시는 매주 1회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kostat.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조사(보고)·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	------	--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 제1항 후단, 제20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를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 포함) 1부</li> <li>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li> <li>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li> <li>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li> <li>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li> <li>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 통계의 명칭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변경사항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③ 그 밖의 참고사항 :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여부 등 변동 사항)을 적습니다.



## 제 4 절

##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주요내용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안관리 등 협의
-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

##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자료보유 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

- 열악한 조사환경, 국민 응답부담 경감 차원,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사전에 공감대 형성 필요



##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 설명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 제공)”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을 설명
- \* 단,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대체식별번호(PIN)로 변환 후 삭제하여 개인식별정보 입수 차단



## 최소한의 자료요청으로 제공기관의 부담 경감

- 자료제공 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등 제공범위 등에 관한 협의 추진



## 활용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행정자료별 레이아웃 및 속성 등 기본정보는 보유기관으로 사전에 입수하며, 자료요청 및 입수 시 활용 필요



## 4-2 행정자료 입수

### 행정자료 입수 절차

입수 절차	세부 내용
필요자료 파악	·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 보유기관, 보유행정자료 및 활용 가능한 조사통계 등
입수계획 수립	· 기준시점, 입수범위, 입수방법, 입수항목 등 입수계획 수립
입수 협의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 · 자료 보유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자료 입수	· 자료보유기관과 협의하여 문서로 요청
자료 활용	· 입수한 행정자료를 연계 방법에 따라 활용

### 문서상 요청사항

#### 통계법 시행령 제38조

- ①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 ② 행정자료의 명칭
- ③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 ④ 행정자료의 내용과 범위
- ⑤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⑥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행정자료 제공기관 및 주요 내용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입수시기*
인구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인구 현황 · 가구 현황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출입이동 · 전출입사유	상반기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혼인 · 이혼	6월
			· 출생	10월
			· 사망	11월
경제	주택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주택 소유 현황	10월
일자리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 구직신청건수 · 구직희망 고용형태 · 구직희망 직종 · 구직희망 직종 경력여부 · 구직희망 근무지역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4월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자격취득· 상실자 ·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3월
창업	사업체통계등록부/ 사업자등록자료	통계청/ 국세청	· 사업등록자 현황 · 사업자 등록상태	10월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보건복지부 해당지자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담당자 협의
	장애인등록자료	보건복지부 해당지자체	· 장애인등록인구 현황	담당자 협의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인구	3월
	공무원연금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가입인구	5월
	사학연금자료	사학연금공단	· 사학연금 가입인구	5월
건강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질환 및 주요 암 진료현황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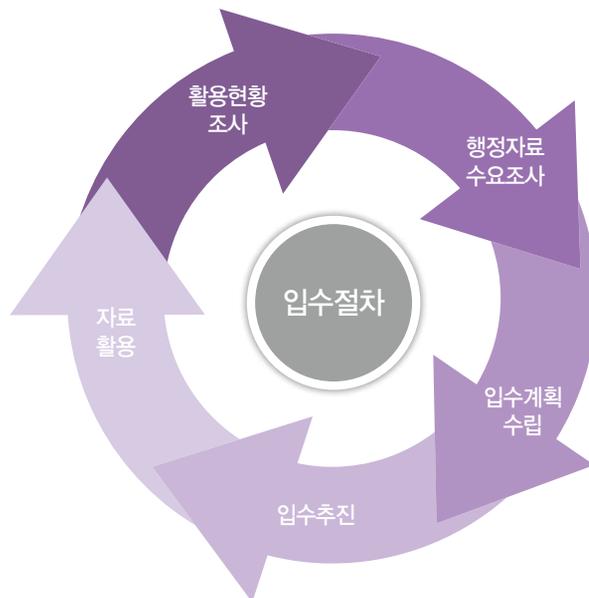
\* 행정 자료별 입수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행정자료 입수 절차

- (수요조사) 통계 생산부서에 기존 통계조사에 활용이 가능하거나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 수요파악
- (입수계획 수립) 통계 생산부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입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정자료 입수를 추진
- (입수협의)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각 행정자료 항목별 통계조사에 필요한 내역을 분석한 후 입수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자료 보유기관과 협의
- (자료입수) 입수협의 완료 후 통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문서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의 송·수신시 보안이 가능하도록 상호협의
- (자료활용) 입수한 행정자료에 대해 활용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부서에 제공
- (피드백) 입수한 행정자료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행정자료 입수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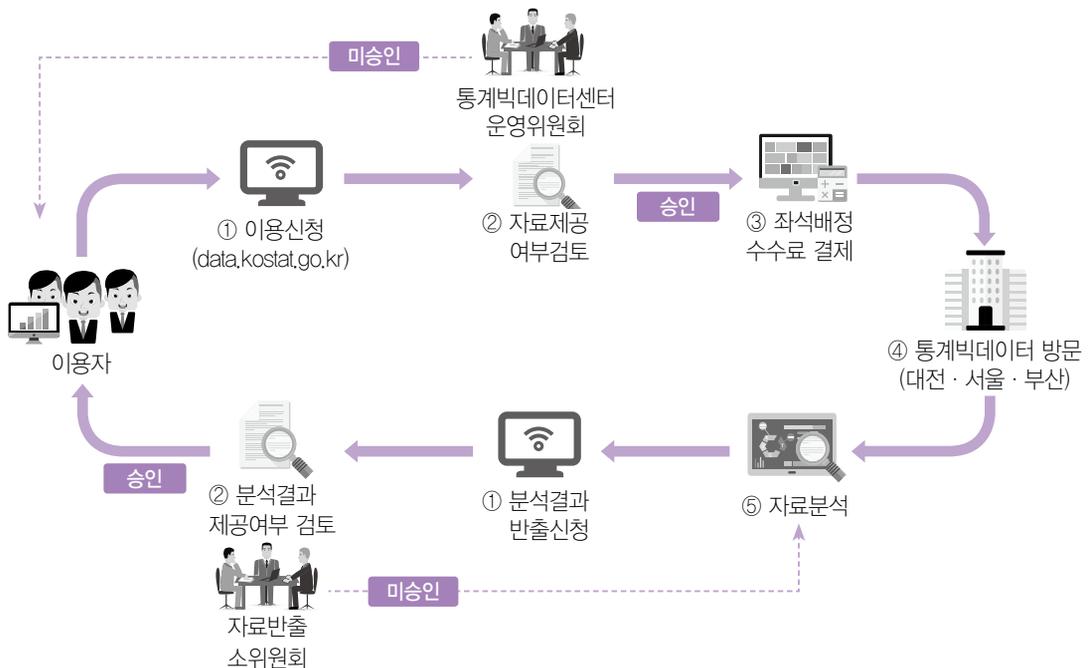


### 4-3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 안내

#### 통계빅데이터센터 개요

- 운영 목적
  - ①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통계자료 제공
  - ②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공공데이터간,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간의 연계 서비스 제공
  - ③ 통계 및 분석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민간 데이터 간의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 대상 : 통계작성기관, 통계청과 MOU체결기관, 일반이용자 등
- 이용 기간 : 4주(1회에 한하여 2주 연장)
- 이용 방법 : 통계빅데이터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센터 내 설치된 PC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
- 이용 절차 : 센터 이용 절차 및 이용자료 상담 → 자료 이용 신청 → 자료 요청 항목에 관한 자료제공 여부 결정 → 좌석 배정, 자료 추출 원격시스템 탑재 → 센터 방문, 자료분석 및 분석 결과 반출 요청 → 반출 승인 후 반출

|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 절차 |



**이용 신청 방법**

## ● 접수 방법

- 방문 1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작성에 우선권 부여

## ● 제출 서류

- 센터 이용 협조 요청 문서, 자료 이용 신청서, 보안 서약서

**제공자료 현황**

부문	자료명	시계열
경제·사회	기업등록부 DB(총괄)	2010 ~
	사업장 기초 DB(4대보험)	2009 ~
	사업장 기초 DB(법인)	2008 ~
	종사자 DB	예정
	육아휴직자 DB	예정
인구·가구	등록센서스 인구DB	2015 ~
	등록센서스 가구DB	2015 ~
	등록센서스 주택DB	2015 ~
농림어업	농업DB	2015 ~
	임업DB	2015 ~
	어업DB	2015 ~

※ 자료별 세부항목은 센터 또는 지방통계청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통계빅데이터센터 주소**

지역	주소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13층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9층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CENTAP, 6층





참고자료

##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부터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허가 받은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국가업무의 중대한 위해(危害) 행위임을 자각한다.
3. 이에 본인은 통계청 자료 이용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 종료 후에도 이용 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비밀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향후 통계청 자료의 이용 불가, 손해배상 책임 등 국가보안법, 형법, 통계법 등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서명 또는 인)  
 직위/직급 :  
 성 명 :



## 참고자료

## 데이터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1. 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자료제공 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센터 이용 절차, 신청서 작성, 시스템 사용 방법 등
  - 자료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된 PC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 통계청의 승인없이 중간결과물 무단 반출 및 공표 금지
  -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분석 작업 가능
  - 분석 작업 시 인터넷이나 개인 USB 사용 금지
  -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수정) 시 센터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자 외에는 자료 열람 금지
  -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자료 사용 금지
4. 통계 분석 결과물은 통계청 승인 이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 반출신청 자료 이외의 이용자료 일체는 이용기간 종료 1달 후 삭제 원칙(복구 불능), 다만 추후 이용 등 필요시에는 데이터센터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승인된 분석 결과물을 자료인용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 통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센터 이용자는 통계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통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숙지하여야 한다.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청년통계



PART



III

# 통계표 작성

행정자료 연계 48

조사통계 활용 53

기타 자료 활용 58



## 3

## 통계표 작성



## 제 1 절

## 행정자료 연계

## 주요내용

- 행정자료의 결측값, 이상치에 대한 자료정제
-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한 DB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 검토 및 정비

- 자료의 중복검사, 항목검사, 코드 유효성 검사 등을 통해 자료의 오류유형 파악 및 원자료 정비
- 자료 정제 시 결측값과 이상치는 행정자료 정제방법에 따라 정비

## | 원 행정자료 정제방법 |

중복검사	항목검사	코드 유효성 검사
① 식별자 정의 • 자료의 식별자 파악	① 항목값 검사방법 정의 • 항목값의 오류점검 방법 정의	① 코드별 건수 집계 • 입수된 행정자료에 대하여 코드 값별 건수 집계
② 식별자 중복 추출 • 중복자료 추출	② 항목별 검사 • 항목 오류 검사 • 오류 유형 도출	② 미정의 코드 추출 • 코드표상의 코드와 비교하여 미 정의된 코드 추출
③ 중복데이터 점검 및 분석 식별자 적합성 검증 • 중복데이터 정비규칙 정의 • 정비규칙에 따라 중복데이터 정비	③ 오류 정비규칙 정의 및 정비 • 오류 정비규칙 정의 • 정비규칙에 따라 오류 정비	③ 미정의 코드 정비규칙 정의 및 정비 • 미정의된 코드에 대한 정비규칙 정의 • 정비규칙에 따라 오류 정비



**행정자료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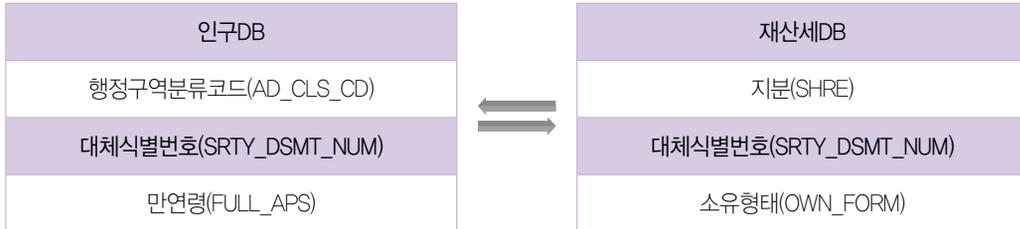
- 행정 자료에서 고유 식별자(연계키)로 통계표 작성용 DB 구축
  - 행정자료의 정제 과정에서 결측값은 통계적 대체방법으로 보완
    - \* 평균대체법, 회귀대체법, 핫덱대체법 등
  - 보완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연계 · 통합, 분리, 상호보완 등 자료 재구성
  - 자료특성을 분석하여 산업 · 직업분류코드를 일치시키고, 주소표준화 등 통계용 DB 구축

**대체(Imputation) 방법**

- **평균대체법(mean imputation)**
  - 전체표본을 몇 개의 대체군으로 분류한 후 각 층에서의 평균값을 대체하는 방법
- **최근방대체법(nearest neighbor imputation)**
  - 미국의 경상인구 조사방법에서 발생한 결측자료의 처리에 사용 응답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한 후 결측값 바로 이전의 응답을 결측값으로 대체
- **콜드덱대체법(cold-deck imputation)**
  - 기존에 실시된 조사에서의 유사한 항목의 응답값으로 대체.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차이를 무시하고 과거자료를 사용하여 응답의 일치성에 문제 소지
- **회귀대체법(regression imputation)**
  - 결측값을 가진 변수를 다른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적합시킨 후 예측값으로 대체
- **핫덱대체법(hot-deck imputation)**
  - 대체층 내에서 대체값을 확률추출에 의해 랜덤하게 선택하여 결측값에 대체하는 방법



## 작성예시



※ 재산세DB(주택부문)는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의 실제 거주지 기준의 자료 생성을 위해 인구 DB에 재산세DB를 결합

- 연계 방법(left join)

```
PROC SQL;
CREATE TABLE 생성테이블 이름 AS
SELECT 인구DB-행정구역분류코드, 인구DB-대체식별번호,
       재산세DB-지분, 재산세DB-대체식별번호, 재산세DB-소유형태
FROM 인구DB LEFT JOIN 재산세DB ON
      (인구DB-대체식별번호 = 재산세DB-대체식별번호);
WHERE 재산세DB-대체식별번호 NOT IS MISSING;
QUIT;
```

- 구간생성 방법(연령 그룹화)

```
PROC SQL;
CREATE TABLE 생성테이블 이름 AS
SELECT 행정구역분류코드, 대체식별번호, 만나이, 지분, 소유형태,
       case when 만나이 >= 50 then '50이상'
            when 만나이 >= 45 then '45~49세'
            when 만나이 >= 40 then '40~44세'
            when 만나이 >= 35 then '35~39세'
            when 만나이 >= 30 then '30~34세'
            when 만나이 >= 25 then '25~29세'
            when 만나이 >= 20 then '20~24세'
            when 만나이 >= 15 then '15~19세'
            else '14세이하' end AS age_group
FROM 변수를 불러올 테이블;
QUIT;
```

● 1인 다소유 주택건수, 주택소유지분합 계산

```
proc sql;
create table 생성테이블 이름 as
select 대체식별번호,
sum(지분) as 지분합,
sum(주택) as 주택합,
연령그룹변수
from 변수를 불러올 테이블
group by 대체식별번호;
quit;
```

● 주택수, 주택소유지분 그룹화

```
PROC SQL;
CREATE TABLE 생성테이블 이름 AS
SELECT 대체식별번호, 지분합, 주택합, 연령그룹,
(case when 주택합 >=4 then '4건이상'
when 주택합 >=3 then '3건'
when 주택합 >=2 then '2건'
else '1건' end)
AS 주택그룹,
(case when 지분합 >= 4 then '4호초과'
when 지분합 >= 3 then '3호초과~4호이하'
when 지분합 >= 2 then '2호초과~3호이하'
when 지분합 >= 1 then '1호초과~2호이하'
else '1호이하' end)
AS 지분그룹
FROM 변수를 불러올 테이블;
QUIT;
```



## 작성예시

- 테이블(연령x주택수, 연령x소유지분) 생성

<pre>PROC TABULATE DATA=작업한DB;     CLASS 연령그룹;     CLASS 주택그룹;     TABLE 연령그룹,주택그룹*N; RUN;</pre>	<pre>PROC TABULATE DATA=작업한DB;     CLASS 연령그룹;     CLASS 지분그룹;     TABLE 연령그룹,지분그룹*N; RUN;</pre>
--	--

- 결과표

		주택그룹			
		1건	2건	3건	4건
연령 그룹	-14				
	15-19				
	⋮				
	45-49				
	-50				

		소유지분 그룹				
		1건 이하	1건 초과 ~2건 이하	2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4건 이하	4건 초과
연령 그룹	-14					
	15-19					
	⋮					
	45-49					
	-50					



## 제 2 절 조사통계 활용

### 주요내용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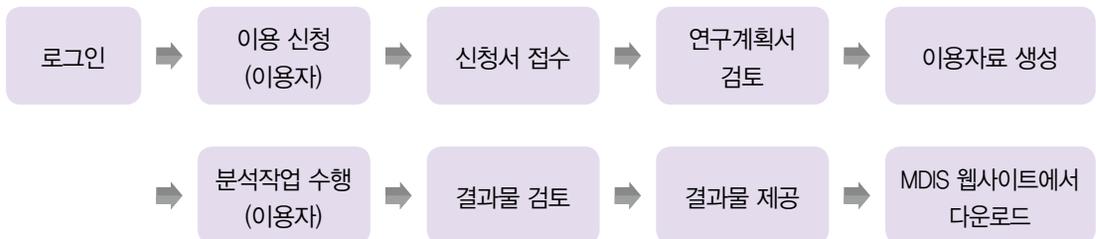
### 조사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 통계청 통계 및 지역 사회조사 등 관련된 조사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MicroData Intergrated Service)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심층적 분석 가능



### MDIS(MicroData Intergrated Service)

-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이용자가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 <http://mdis.kostat.go.kr>나 이용센터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 주요 제공 자료

구분	조사명
사업체 부문(1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조사</li> <li>• 경제총조사</li> <li>• 광업제조업조사</li> <li>• 기업활동조사</li> <li>• 도소매업조사</li> <li>• 서비스업조사</li> <li>• 서비스업총조사</li> <li>• 운수업조사</li> <li>• 전국사업체조사</li> <li>•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li> </ul>
인구부문(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인구이동통계</li> <li>• 사망원인통계조사</li> <li>• 인구동향조사</li> <li>• 인구총조사</li> <li>• 주택총조사</li> </ul>
가구부문(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금융 복지조사</li> <li>• 가계동향조사</li> <li>• 가계자산조사</li> <li>• 가구소비실태조사</li> <li>• 경제활동인구조사</li> <li>• 녹색생활조사</li> <li>• 사회조사</li> <li>• 생활시간조사</li> <li>•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li> <li>• 인력실태조사</li> <li>• 지역별고용조사</li> <li>• 초중고사교육비조사</li> </ul>
행정통계(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어귀촌인통계</li> <li>• 신혼부부통계</li> <li>•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li> <li>• 일자리행정통계</li> <li>• 주택소유통계</li> <li>• 퇴직연금통계</li> </ul>

### ● 서비스 이용 후 출처 명시

-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논문, 출판, 연구발표 등의 결과는 반드시 그 자료출처를 명시한 후 대외적으로 활용 필요
- 자료생산처, 자료명칭, 자료기준연도, 자료제공처, 이용자료유형, 이용고유번호, 제공받은 날짜, 자료접근 경로 등

ex)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2~2016), 통계청 MDIS, RDC(DB18062604G), 20181612 제공받음,  
<http://mdis.kostat.go.kr>

**이용센터서비스(RDC, Research Data Center)**

- 통계망이 차단된 지정된 장소에서 승인용 또는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현황

RDC명	주소	운영시간
통계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10층 마이크로데이터과	주 5일 운영 (9시~18시)
서울 통계빅데이터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9층	
한국통계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한일빌딩 6층 한국통계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K269호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2층 정보검색실	
국회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상당대로 1 국회도서관 3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내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808호	월화수 운영 (9시~18시)



## 작성예시

## 1.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항목

전입지(시도)	전출지(시도)	세대주 성별
전입지(시군구)	전출지(시군구)	1인이동여부
전입지(읍면동)	전출지(읍면동)	이동자_총계
전입년	전출구분	이동자_총남자
전입월	전입사유	이동자_총여자
전입일	세대주 관계	
전입구분	세대주 만나이	

## 2.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표 생성

## ■ 전입자 정보 정리

```
data 저장할 데이터셋;
set 불러올 데이터셋;
keep 변수1 변수2 변수3; (불러온 데이터셋에서 삭제 하지 않고 특정변수만 획득하기)
if 변수= " then delete; (변수가 무응답인 데이터 삭제)
run;
```

## ■ 전출입지가 다른 데이터만 정리

```
data 저장할 데이터셋;
set 불러올 데이터셋;
where 전입지(읍면동)^ = 전출지(읍면동);
run;
```

## ■ 성별 변수값 지정

```
data 저장할 데이터셋;
set 불러올 데이터셋;
if 전입자 성별=1 or 전입자 성별=3 then sex=남성;
if 전입자 성별=2 or 전입자 성별=4 then sex=여성;
label sex='성별';
run;
```

## ■ 필요한 연령 데이터만 불러오기

```
data 저장할 데이터셋;
set 불러올 데이터셋;
where 전입자 만나이 >= 원하는 시작 나이 and 전입자 만나이 <= 원하는 마지막 나이
run;
```

■ 집계표 생성

```
proc tabulate data=데이터셋;
class 그룹화할 변수 나열;
  ex) class 전입지 성별 전입자 나이 전입자 성별 전입사유
format 변수명1 포맷명1. 변수명1 포맷명1.;
  ex) format 성별 성별. 전입지 지역. 전입자 나이 나이. 전입사유 전입사유.;
table (행), (열)*;
title "통계표명";
run;
```

■ 다양한 테이블 생성 방법

- TABLE A\*B

A=1			A=2		
B=1	B=2	B=3	B=1	B=2	B=3

- TABLE A B

A=1	A=2	B=1	B=2	B=3
-----	-----	-----	-----	-----

- TABLE A B\*C

A=1		A=2		B=1		B=2		B=3	
C=1	C=2								

- TABLE B\*(A ALL)

B=1		B=2		B=3		B=1	B=2	B=3
A=1	A=2	A=1	A=2	A=1	A=2	ALL	ALL	ALL

- TABLE A, B\*(N PCTN(B));

	B			
	1		2	
	N	PCTN	N	PCTN
A				
1	10	25*	30	75
2	20	33	40	67

\* 전체 B에서 A=1일 경우에 대한 B=1의 비율  
 $25=10/(10+30)*100$



## 제3절 기타 자료 활용

## 주요 내용

- 원자료 입수가 어려운 자료는 집계표로 자료 요청
- 관련 자료 보유 기관에서 공표하는 통계표 및 자료 활용



## 집계표로 자료 입수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원자료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집계표 형태로 요청
  - 대상자료, 집계기간, 집계단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계표의 표측 및 표두 항목 구분을 자세히 정의한 후 제공 요청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요청시기
일자리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신청건수</li> <li>• 구직희망 고용형태</li> <li>• 구직희망 근무지역</li> <li>•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li> </ul>	3월
일자리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li> <li>• 자격 취득·상실자</li> <li>• 실업급여 수급</li> </ul>	3월
연금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인원</li> <li>• 수급인원</li> </ul>	3월
연금	공무원연금자료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인원</li> <li>• 수급인원</li> </ul>	5월
연금	사학연금자료	사학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인원</li> <li>• 수급인원</li> </ul>	5월

**지자체 내부 자료 활용**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등 관련 부문의 통계표 작성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비고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 수급인구	담당자와 협의 필요
복지	장애인등록 자료	• 장애인 등록 인구	"

**기타 자료 활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활용 :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 혼인율, 이혼율 등의 통계자료 이용

| kosis 이용 자료별 경로 |

구분	주요 내용	경로
인구	• 인구 이동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가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	• 출산율    • 사망률 • 혼인률    • 이혼율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동향조사
일자리	• 청년 경제활동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고용 · 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청년통계





PART

IV

# 결과 분석



## 4

## 결과 분석

## 주요 내용

-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고,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통해 결과표 확정
-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



## 관련 자료와의 수준분석

- 인구 및 가구 통계표 : 통계청 등록센서스의 지역별 연령별 수치 비교
- 주택 통계표 : 통계청 등록센서스 또는 주택소유통계와 비교
  - 주택총조사는 거주자와 상관없이 지역내 주택수 집계
  - 주택소유통계는 총 주택 중 일반가구내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망자, 해외 이주자 및 집단시설거주자 등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간주되는 동일가구 내 타 가구원, 또는 분가 가구 등으로 해당주택 소유자를 이관하여 집계
- 고용보험 통계표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통계 비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의 피보험자수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하고, 청년통계는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두 자료 간 지역기준 피보험자 수치가 다름
- 창업통계표 :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와 비교
  - 기업생멸통계는 기업체 기준, 청년통계는 사업자등록 기준임에 유의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연보와 비교

**결과분석**

-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함께 공표(이용자 유의사항)
- 통계작성 목적에 부합하고, 활용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통계표 구성 및 이용 자료 등을 정리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나 표보다 그래프를 이용한 정보 제공
- 분석과정
  - 행정 자료를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연계한 통합마스터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 \* 인구가구 및 주택소유통계등록부-공무원 및 사학 연금자료-고용보험자료-경제활동등록부-사업체기업체등록부
  - 전체자료 건수, 변수별 입력값 범위 및 결측값 등 기초점검
    - \* 통계등록부의 결측치는 '미상' 범주로 통계표 작성(제외 후 집계 지양)
  - 행정변수를 사용하여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파생변수 정의 후 생성
    - \*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한 예시

행정변수		→	통계분석용 파생변수 명 및 코딩 값	
변수명 및 코딩값	의미		변수명 및 코딩값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가입여부 = 'Y'</li> <li>• 자격상실일자 = '결측'</li> </ul>	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 고용보험가입여부 = '가입자(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가입 여부 = 'Y'</li> <li>• 자격상실일자 = '년월일'</li> </ul>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실자)	• 고용보험가입여부 = '미가입자(상실자)'		

\* 행정변수와 생성한 파생변수 간 교차 점검을 통한 변환오류 확인

- 주요기초자료 특징 및 동일자료를 이용한 타 통계와의 비교 시 유의점
  - (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작성대상 범위로 하여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의 총수, 연령별·지역별 인구등과 차이가 있음
  - (주택) 청년통계의 주택소유현황은 대상지역내 청년(외국인 포함)과 식별정보로 연계되는 주택소유자의 해당주택 소유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의 집계기준과 다르므로 비교 시 유의해야 함.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주택 수는 주택소재지 기준 집계로 본 통계의 지역별 주택 수와는 다름



- (사업자등록자) 충남거주 청년인구와 기업등록부자료의 사업자등록자와 연계되는 사업자 등록자수를 집계하여, 기업체 소재지 기준인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활동, 유지 및 소멸관련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공무원재직자와 연금 미수급 퇴직자에 대한 연금가입자 수로, 유족연금가입자와 장해연금가입자는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
- (고용보험) 경제활동등록부와 연계된 충남거주 청년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와 상실자수를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주소지 기준 고용보험통계와 수치가 다름에 유의



### 통계표 제표 및 해석 시 유의사항

-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수집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집계와 분석이 가능하여 작성시점, 작성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에 따라 자료 해석에 유의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  
0 : 단위미만, 구성비 0%  
- : 해당자료(숫자) 없음



## 주요 정책활용

## 표준매뉴얼 개발통계의 정책활용계획 [충청남도 청년통계]

### 1. 작성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 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 2017년 충청남도 18세~34세 청년인구 비중은 20.3%로 전국 평균(22.0%)보다 낮아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필요

### 2. 정책활용계획

- 우리 도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을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사업 선도시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내실있는 실행을 위하여 가칭 「청년 정책종합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
- 청년정책종합계획 대상분야 : 8개 분야(국무총리실 청년사업 기준)

- |         |            |        |        |
|---------|------------|--------|--------|
| ① 경제일자리 | ② 결혼·출산·육아 | ③ 주거   | ④ 노동보호 |
| ⑤ 금융부채  | ⑥ 청년문화     | ⑦ 생활지원 | ⑧ 참여소통 |

⇒ 각 분야에 대한 신규·기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촘촘한 청년통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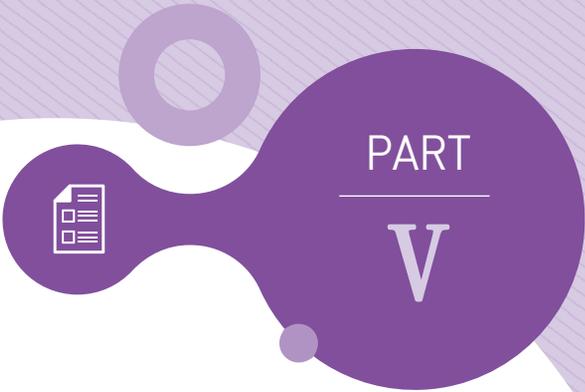
##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 목	수 록 내 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통계작성대상연령, 통계작성기간 등, 문의처
목차	• 통계개요, 주요 활용 행정자료, 통계표, 결과 분석 등
통계개요	• 작성목적, 법적근거, 작성연혁, 작성주기, 작성기간, 결과 공표 등
활용 행정자료	• 행정자료 명, 제공기관, 관련 주요 작성항목
작성통계표	
주요 결과 요약	
부문별 결과	
부록	• 통계표, 주요용어, 행정자료 서식



## 최종보고서 오류 점검 내용

부 문	세 부 항 목	
보고서 구성	표지	간행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승인통계마크 및 승인번호가 있는가?
	용어, 개요 등 설명	결과 요약(요약 보고서)이 기술되어 있는가?
		작성연혁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한 설명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문의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행정보	발행인, 발행처, 발행기관이 제시되어 있는가?	
기타	주요 용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통계 결과물만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내용	행정자료 및 작성통계표	주요 활용 행정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행정자료별 주요 작성통계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 및 그래프	통계표(그래프) 형태의 일관성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에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PART

V

# 자료공표 및 관리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68

개인정보 보호 69





## 5

# 자료공표 및 관리



### 제 1 절

##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주요 내용

-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제공



###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등을 통계이용자에게 안내
  - KOSIS(<http://kosis.kr>) : 통계표
  - 지자체 홈페이지 : 보도자료, 보고서
- KOSIS 통계표 수록을 위한 이용 방법
  -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통계DB시스템) <http://stat.kosis.kr/nsist>
  - ※ 자세한 사항은 통계DB시스템 지침서 및 매뉴얼 참고(DB시스템 자료실에 수록)



### 담당자 연락처 정보

- 통계의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 통계설명자료 제공

- 각종 통계 설명자료(예 :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를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가 이용 할수 있도록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 제 2 절

## 개인정보 보호

## 주요내용

- 행정통계를 생산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적·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통계법 제4조의③(국가 등의 책무),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등에 의하여 처벌 규정



## 통계법

**제4조의(국가 등의 책무)**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행정자료 활용 시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 제24조, 제33조 비밀보호의무 등</li> <li>•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li> </ul>
제공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이 원하면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암호화</li> </ul>
자료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오프라인) 개별 방문하여 보안 USB를 통한 저장 후 봉안봉투에 봉인 후 제출</li> </ul>
자료확인, 정제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수자료 서버에 장착</li> <li>• 개인식별번호를 보안번호로 변환 후 자료정제 및 DB 구축</li> </ul>
통계작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li> <li>• 개인PC로 다운로드 및 화면캡처 불가</li> </ul>

##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 행정자료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구축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 입수한 행정자료에 개인 식별번호는 암호화를 거쳐 보안식별번호로 대체
  -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 의무
- 외주용역 사업 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PART

V

# 부 록

1. 통계표 설명서 72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12
3. 개발 계획안 125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133



## 1

## 통계표 설명서

영역

인구·가구

자료

인구 통계등록부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청년 인구



## 자료 설명

- ▶ 통계청은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센서스에서 제외된 인구와 혼인, 이혼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인구 관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는 11월 1일 0시 기준 대한민국에 상주(거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기해외체류, 국외이주, 이민, 사망, 국적상실, 말소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거주불명 등록자, 미상은 제외
- ▶ 인구 부문 작성 시 단순한 현황 자료는 KOSIS 인구총조사 통계표 및 주민등록자료 활용 가능하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사용 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 주요 용어 설명

- ▶ 기관별로 청년 연령층이 다양하여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조례, 청년 창업지원조례 등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만 15세~39세를 청년 범위로 정함(통계청 청년 연령구간은 만 15~29세)



### 작성 방법

- ▶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통계표 집계
- ▶ KOSIS 인구총조사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 통계청 자료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가구원 또한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주민등록자료와 차이가 있음



### 통계표 구성

#### < 청년 인구 및 비율 >

(단위 : 명, %)

	전체 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 ▶ 청년인구비율 : 시도 청년인구/시도 전체인구\*100

#### < 성별 청년인구 >

(단위 : 명, 여자 100명당 명, %)

청년인구	남자(A)		여자(B)		성비 (A/B×100)
	구성비		구성비		

- ▶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성비=(남자인구/여자인구)\*100)

#### < 연령별 청년인구 >

(단위 : 명, %)

	15세~39세 청년인구 (B)							청년 인구 비율 (B/A ×100)	
	구성비	15~29세 청년인구					30~34세		35~39세
		구성비	15~19세	20~24세	25~29세	구성비			

#### < 혼인상태별 청년인구 >

(단위 : 명, %)

합계	미혼		혼인		사별		이혼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혼인상태는 미혼, 혼인, 사별, 이혼으로 분류



## 영역

인구·가구

##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입 및 전출이동자수



## 자료 설명

- ▶ 읍면동에서 매일 접수한 전입신고서 전산처리 결과를 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서 전국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송하고, 통계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 ▶ 주민등록전입신고 → 동·읍·면 → 중앙주민전송망센터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중계시스템 → 통계청



## 주요 용어 설명

- ▶ 이동 :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 전입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 전출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 시도간 이동 : 시도 경계를 넘는 거주지 이동
- ▶ 시도내 이동 : 동일 시도내에서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



## 작성 방법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 KOSIS 자료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가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표 구성

〈 순이동 및 순이동률 〉

(단위 : 명, %)

주민등록연앙인구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순이동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순이동 : 전입과 전출의 차이임(전국의 순이동은 0)
- ▶ 이동률 :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 (이동률 = 이동자수/연앙인구\*100)

〈 전입이동 〉

(단위 : 명, %)

전입이동	시도내이동	시군구내전입	시군구간전입	시도간전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입사유 〉

(단위 : 명, %)

전입이동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구성비						

- ▶ 모든 전입이동자의 전입사유로 분류했으나 시도간 전입이동의 전입사유로 통계표 작성 가능

〈 전입 전 거주지 〉

(단위 : 명, %)

전입이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구성비							
전입이동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성비							

- ▶ 시도간 전입이동자의 전입전 거주지로 분류했으나, 시도내 전입 이동자의 전입전 거주지의 통계표 작성 가능



### 〈 전출이동 〉

(단위 : 명, %)

전출이동	시도내이동		시군구내 전출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연령별, 성별 분류 기준은 시군간 전입 수와 시군간 전출 수 같음

### 〈 전출사유 〉

(단위 : 명, %)

전출이동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구성비						

▶ 시도간 전출이동자의 전출사유 또는 시도내외 모든 전출 이동자의 전출사유의 통계표 작성 가능

### 〈 전출인구의 전출지 〉

(단위 : 명, %)

전출이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구성비							
전출이동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성비							

▶ 시도간 전출이동자의 전출지 또는 시도내외 모든 전출 이동자의 전출지의 통계표 작성 가능

영역

인구

자료

인구동향조사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율</li> <li>• 사망률</li> <li>• 혼인율</li> <li>• 이혼율</li> </ul>



## 자료 설명

- ▶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는 4종 신고 이외에 기아발견조사, 실종신고, 혼인취소신고내용을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사항을 통계청으로 송부,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
  - 인구동향조사 조사표는 대법원 가족관계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 가족관계신고서에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반영하고 신고인의 신고를 통해 자료 수집
- ▶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MDIS에 연간자료 A형과 B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A형은 시도와 연령, B형은 시군구와 5세 연령구간 자료로 외부에 제공



## 주요 용어 설명

- ▶ 출생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 ▶ 사망 : 출생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상태
-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작성 방법**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 KOSIS 통계표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동향조사)

**통계표 구성****< 출산율 >**

(단위 :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출산율
--	--------	--------	--------	--------	--------	--------	--------	-----------

- ▶ 모의연령 출산율 : 해당연령 여성인구 출생아수 / 해당연령 여성 연앙인구 \* 1,000
- ▶ 연령별 출산율 : 특정연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

**< 사망률 >**

(단위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	--------	--------	--------	--------

- ▶ 연령별사망률 : 인구의 연령구조별 변화 측면을 파악을 위하여 연령별로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혼인율 >**

(단위 : 해당연령 천명당 건)

	남편					아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 연령별 혼인율은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이혼율 >**

(단위 : 해당연령 천명당 건)

	남편					아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 연령별 이혼율은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영역

인구·가구

자료

가구 통계등록부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청년 가구



## 자료 설명

- ▶ 통계청은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센서스에서 제외된 인구와 혼인, 이혼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인구 관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구축
-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는 11월 1일 0시 기준 대한민국에 상주(거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기해외체류, 국외이주, 이민, 사망, 국적상실, 말소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자, 미상은 제외
- ▶ 가구부문 작성 시 단순한 현황 자료는 KOSIS의 인구총조사 자료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사용 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 주요 용어 설명

-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 자가 : 소유권 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 일반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가구), 1인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 집단가구 : 남남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세대구성〉

- ①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 ②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 ③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자녀+양친(또는 한부모), ②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④ 4세대가구 :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 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

### 〈거처종류〉

- ①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②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③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
- ④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⑤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매매 가능)
- 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및 사회시설, 상가 건물 내 주택 등)

### 〈점유형태〉

- ① 자기 집 :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② 전세(월세 없음) :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 지불
  - 사글세 :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 ⑤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 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작성 방법

- ①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자료 및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표 집계



통계표 구성

〈 청년가구 및 비율 〉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		청년가구		청년가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 청년가구비율 : 시도 청년가구/시도 전체가구\*100

〈 청년 가구 유형 〉

(단위 : 가구, %)

청년가구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집단시설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집단시설가구로 분류하며, 주민센터등거주불명자, 외국인불법 체류자, 특별조사구는 제외

〈 가구원수별 가구 〉

(단위 : 가구, %)

일반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 거처 종류별 가구 〉

(단위 : 가구, %)

일반 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거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호텔숙박등숙박업소,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잡집 및 비닐하우스, 기타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호텔숙박 등 숙박업소,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잡집 및 비닐하우스, 기타는 주택이외의 거처로 집계

**〈 구성형태별 가구 〉**

(단위 : 가구, %)

일반가구	세대구성 가구	비혈연 가구	1인 가구

▶ 일반가구 중 청년가구주 기준 세대구성가구, 비혈연가구, 1인가구로 집계

**〈 청년 1인가구 비율 〉**

(단위 : 가구, %)

총청남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 청년1인가구 비율 : 총청남도 청년 1인가구/총청남도 전체 1인가구\*100

**〈 세대구성별 가구 〉**

(단위 : 가구, %)

세대구성가구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이상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세대구성가구 중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상으로 분류 가능

영역 인구·가구 자료 주민등록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주민등록자료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	· 세대주 현황

 자료 설명

- ▶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있는 자체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외국인은 제외함.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의한 집계 자료임

 주요 용어 설명

-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대표자

 작성 방법

- ▶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표 집계

 통계표 구성

〈 세대주 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세대주 인구		1인 세대주 인구		비세대주 인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2017. 00. 00.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으로 세대주 산정(외국인 제외)



영역

인구·가구

자료

신혼부부통계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부부 수



## 자료 설명

- ▶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는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작성한 통계로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함
-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초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
  - \* 인구동행(혼인·이혼·출생·사망)조사, 인구·가구·일자리행정통계·주택소유통계 DB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보육행정자료 등



## 주요 용어 설명

- ▶ 신혼부부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함
  - 혼인신고 기준이므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
  -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 규정



## 작성 방법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또는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 ▶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시도별 자료 활용  
(국내통계/기관별통계/통계청/신혼부부통계)
- ▶ 시도별 통계 등 통계표의 주 작성단위는 신혼부부 수(쌍)로서 부부가 서로 다른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가중치(0.5)를 적용하여 산정

 통계표 구성

〈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수 〉

(단위 : 쌍, %)

합 계	초 혼		재 혼		남 편		아 내		둘 다		미 상
	구성비										

- ▶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지역별 가중치(0.5)를 적용
- ▶ 0.5인 경우 반올림하여 전체적인 합계 맞지 않을 수도 있음

〈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

(단위 : 쌍, %)

합 계	1년 이내 (1년차)		1~2년 이내 (2년차)		2~3년 이내 (3년차)		3~4년 이내 (4년차)		4~5년 이내 (5년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혼인연차 : 해당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11월 1일 기준)  
예시 : (1년차) '15.11.1.~'16.10.31. / (2년차) '14.11.1.~'15.10.31. / (3년차) '13.11.1.~'14.10.31.

〈 혼인연령차별 신혼부부 수 〉

(단위 : 쌍, %)

합 계	남자 연상				동갑	여자 연상			
	10세 이상	6~9세	3~5세	1~2세		1~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 ▶ 혼인연차 : 해당 기간 중 혼인신고 기준으로 산정



영역

경제

자료

지역 사회조사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지역 사회조사	통계청 지자체	· 월평균 가구 소득



## 자료 설명

- 지역 사회조사는 해당 지자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함. 조사대상은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15세 이상\*으로 매년 조사

\* 조사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



## 주요 용어 설명

- 가구 월평균 소득 :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으로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임



## 작성 방법

- 지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에서 신청 또는 해당 지자체 보유 자료 활용
- 청년통계 연령대와 지자체 사회조사 연령대 구분이 상이함에 따라 가중값을 재산정하여 적용



## 통계표 구성

## 〈 월평균 가구 소득 〉

(단위 : %)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무응답
----	----------	--------------	--------------	--------------	--------------	--------------	--------------	----------	-----

- 소득변수의 응답값을 집계 후 무응답값 집계 여부와 소득구간 분류 지표 결정

영역

경제

자료

주택 통계등록부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주택 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주택 소유 현황



### 자료 설명

- ▶ 주택 통계등록부는 통계청에서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재산세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구축
- ▶ 주택 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11월 1일 기준임



### 주요 용어 설명

-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 주택 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
- ▶ 주택 소유자 : 직접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된 법적 소유권자



### 작성 방법

- ▶ 통계청 인구 통계등록부와 주택 통계등록부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지자체 재산세(주택분) 자료 활용 가능
- ▶ 인구 통계등록부와 연계하여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수 집계
  - 장기해외체류, 국외이주, 이민, 사망, 국적상실자 등이 소유한 주택을 제외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수임



## 통계표 구성

## 〈 주택소유 청년인구 및 주택소유 비율 〉

(단위 : 명, %)

인구	주택소유자		주택 소유비율
	구성비	비율	

- ▶ 우리나라 총 주택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는 제외)
- ▶ 법인, 중앙 및 지방정부, 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

## 〈 성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

(단위 : 명, %, 호)

인구	주택 소유자	남자		여자		소유 주택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소유 지분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

(단위 : 명, %, 호)

인구	주택 소유자	1호 이하		1호 초과 2호 이하		2호 초과		소유 주택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소유지분율 : 한 주택을 n명(또는 가구)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지분임. 예를 들어 어느 개인(또는 가구)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배우자 (또는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다른 주택 1호(지분 0.5)를 소유한 경우, 총 1.5호로 계산함

## 〈 소유 건수별 주택 소유 청년인구 〉

(단위 : 명, %, 호)

인구	주택 소유자	1건		2건		3건이상		소유 주택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유물건수 : 각 개인(또는 가구)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어느 개인(또는 가구)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에 2건으로 계산함

## 〈 도내 · 외 소재지별 소유 주택수 〉

(단위 : 호, %)

소유주택수	구성비	도내소재	구성비	도외소재	구성비
-------	-----	------	-----	------	-----

- ① 소유 주택수는 청년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지분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상의 주택수로 주택소재지 기준 주택수와 다름

## 〈 단독/공동 소유별 주택수 〉

(단위 : 호, %)

소유주택수	구성비	단독소유	구성비	공동소유	구성비
-------	-----	------	-----	------	-----

- ① 단독소유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의 합을 고려하지 않고, 소유주택 각각 소유지분이 1인 경우 계산함

## 〈 주택 유형별 소유 주택수 〉

(단위 : 호, %)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① 우리나라 총 주택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으로 분류



영역

경제

자료

재산세 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재산세 자료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주택 현황</li> <li>· 소유 건축물 현황</li> <li>· 토지 소유 현황</li> </ul>



## 자료 설명

- ▶ 재산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주민등록 자료와 서로 연계하여 분석
- ▶ 재산세 자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임



## 주요 용어 설명

- ▶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함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출함. 토지만의 가격은 공시지가, 건물의 가격은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더해져서 기준시가 또는 표준시가라고 함.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함
-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에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 적정가격임
-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임



**작성 방법**

- ▶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분석



**통계표 구성**

〈 소유 주택 가격 〉

(단위 : 호, %)

	소유주택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재지 기준 주택 개인소유자의 주택수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 ▶ (연면적) 주거에 이용되는 면적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 건축물 소유 건수별 청년인구 〉

(단위 : 명, %)

	건축물 개인소유자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재지 기준 건축물 개인소유자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 및 주택소유자 제외)
- ▶ 소유물 건수는 각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합산하여 산출  
(예) 개인이 단독으로 1동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건축물 1동을 소유한 경우에는 2건으로 계산

〈 소유 건축물 가격 〉

(단위 : 동)

	소유 건축물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재지 기준 개인소유자의 건축물수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 및 주택소유자 제외)
- ▶ (건축물가액) 기준시점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 토지 소유 >**

(단위 : 명, 필지, %)

주민등록인구	토지 개인소유자		소유 토지수
	구성비		개인소유자 1인당

- ▶ 소재지 기준 토지 개인소유자 및 소유토지수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 개별공시지가별 소유 토지 >**

(단위 : 필지, %)

소유 토지수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재지 기준 개인소유자의 토지수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 ▶ (개별공시지가)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산정가격

**< 면적별 소유 토지 >**

(단위 : 필지, %)

소유 토지수	100㎡ 미만	100㎡~ 500㎡ 미만	500㎡~ 1,000㎡ 미만	1,000㎡~ 5,000㎡ 미만	5,000㎡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소재지 기준 개인소유자의 토지수 산정(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영역

일자리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청년 경제활동



## 자료 설명

- ▶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약 20만 1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조사
- ▶ 조사대상기간 : 4월과 10월 중 15일이 포함된 일주간(일요일~토요일)
- ▶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맞벌이가구 등과 관련된 34개 항목



## 주요 용어 설명

-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① 수입 있는 일이 없으면서, ②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③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가사, 육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 작성 방법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또는 통계청과 협의하여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
- ▶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하여 활용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고용·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
- ▶ 통계청의 공표범위 및 형태와 다르게 분석할 경우 통계적 신뢰성(예, 표본오차) 등을 감안하여 자료 이용·분석시 유의 (시군 연령별 실업률은 공표하지 않는 자료임)



### 통계표 구성

#### < 청년 경제활동 >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영역

일자리

자료

구직신청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 구직신청건수



### 자료 설명

- ▶ 해당 자료는 전국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DB(Work-Net Database)로 집계한 것으로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요 용어 설명

- ▶ 취업건수 : 해당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건수
- ▶ 희망임금 :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희망하는 임금
- ▶ 상용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시간제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적은 근로 계약
-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 작성 방법

- ▶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요청



## 통계표 구성

## 〈 구직신청건수 〉

(단위 : 건, %)

구직신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학력별 구직신청건수 〉

(단위 : 건, %)

구직신청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분류불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중졸이하)고등학교 중퇴 포함, (고졸)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 포함, (대졸)대학교 재학 및 휴학 포함, (대학원졸 이상)대학원 재학 및 휴학 포함

## 〈 구직희망 고용형태 〉

(단위 : 건, %)

구직신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구직희망 직종 〉

(단위 : 건, %)

구직신청	관리직	경영·회계 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 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법률·경찰 소방·교도 관련직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는 구인·구직을 위한 직업분류로 24개 대분류로 구분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 최근('18. 1.1.) 10개의 대분류로 개정됨

〈 구직희망 직종 경력여부 〉

(단위 : 건. %)

구직신청	경력있음							경력없음 (신입)
	소계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구직희망 근무지역 〉

(단위 : 건. %)

구직신청	00	동일(거주) 시군	00	00	00	00	00	00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

(단위 : 건. %)

구직신청건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무응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④ 지난 1년 동안의 구직신청건수에 대한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산정



영역

일자리

자료

고용보험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보험자</li> <li>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자</li> <li>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li> <li>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li> </ul>



## 자료 설명

-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해당 자료는 고용보험관련 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을 집계하여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요 용어 설명

- 적용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이하인 건설공사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단, 소정보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재(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한 자
- 경력취득자 :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취득자 중에서 그 이전시기에 피보험자자격을 한번이라도 취득했던 자
- 실업급여 :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작성 방법

- ④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거나, 원자료 입수 불가능 시 해당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
- ④ 피보험자수와 고용보험 자격취득과 상실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 등록부 자료로 집계가능하며 사용 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와 경제활동 등록부를 연계하여 작성대상 청년인구의 피보험자수 집계



### 통계표 구성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위 :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④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주소지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파악

#### <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위 :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④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주소지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 산업별 작성
- ④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KSIC-10) 개정에 따른 분류('17. 7. 1. 시행)로 21개 대분류로 구분



## 〈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

(단위 : 명)

	자격취득자	자격상실자
--	-------	-------

- ▶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주소지 기준으로 자격취득자 수와 상실자 수 파악

## 〈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

(단위 : 명, %)

자격 상실자	개인 사정		자진퇴사 (회사사정)		폐업, 도산		해고, 명퇴 권고사직 (회사사정)		징계해고,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고용보험 비적용 이종고용		분류 불능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 ▶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주소지 기준으로 자격상실자를 대상으로 자격상실 사유 작성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단위 : 명, 천원)

수급인원	수급액	1인당 수급액
------	-----	---------

- ▶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주소지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 인원 및 수급금액 산정
- ▶ 1인당 수급금액 = 수급금액 / 수급인원

영역

창업

자료

사업체기업체 통계등록부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사업체기업체 통계등록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등록자 현황</li> <li>• 사업자 등록상태</li> </ul>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 자료 설명

- ▶ 사업체 통계등록부는 기업등록부(BR)을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축
- ▶ 통계청 사업체 통계등록부 사용 시 통계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로 해당 통계표 작성



## 주요 용어 설명

- ▶ 사업체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 단위
- ▶ 사업자 :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법인 : 상법, 민법과 특별법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기업
-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
-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암자 등

**작성 방법**

- ▶ 통계청 사업체 통계등록부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와 사업자등록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대상 청년인구의 등록사업체수 집계
  -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 활용 시, 국세통계 공표 자료와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주의 필요

**통계표 구성****< 성별 사업등록자 현황 >**

(단위 : 명, %)

인구	등록 사업체 수	사업등록 청년	성별		사업등록자비율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 ▶ 1년간 유지 또는 폐업 등록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

**< 조직형태별 등록사업체 >**

(단위 : 개, %)

등록사업체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외법인		비법인단체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1년간 유지 또는 폐업 등록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여 집계

**< 사업자 등록상태 >**

(단위 : 개, %)

사업자 등록상태	유지			폐업		
	계속	신규	신규	계속	신규	

〈 업종별 등록 사업체 〉

(단위 : 개, %)

등록 사업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 . .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지난 1년동안 등록된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집계
- ▶ 업종별 사업등록 현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KSIC-10) 개정에 따른 분류('17. 7. 1. 시행)로 21개 대분류로 구분함

〈 업종별 신규 등록 사업체 〉

(단위 : 개, %)

등록 사업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 . .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업종별 폐업 등록 사업체 〉

(단위 : 개, %)

폐업 등록 사업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 . .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영역

복지

자료

기초생활보장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고용보험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지자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자료 설명

- ▶ 해당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한 축적된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임
-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 주요 용어 설명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 기초생활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7종의 급여를 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작성 방법

-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 통계표 구성

##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단위 : 명, %)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수급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영역

복지

자료

장애인등록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등록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지자체	· 장애인 등록인구



### 자료 설명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고 공단심사를 거쳐 장애판정을 받아 등록된 장애인 자료
-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 주요 용어 설명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
- ▶ 장애유형 :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에는 다시 외부신체 기관과 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구분됨
  - ① (외부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② (내부 신체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③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④ (정신장애)정신
- ▶ 지체장애 : 다방면에 걸쳐서 발생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애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



- ▶ 청각장애 :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
- ▶ 언어장애 :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 ▶ 안면장애 : 얼굴, 목, 머리에 눈에 띄는 수술이나 외상 후에 생긴 흉터, 그 흉터가 커지고 함몰되거나 어느 조직 하나가 없어지거나 색소침착, 모발결손이 생기는 장애
- ▶ 신장장애 :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이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 ▶ 심장장애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
- ▶ 간 장애 :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
- ▶ 호흡기장애 : 일생동안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되고 반복해야 살 수 있는 중요한 호흡이 그 운동과정 및 폐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산소-이산화탄소 교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장애
- ▶ 장루, 요루 장애 : 장이나 항문이 기능이 못하고 방광도 제 기능을 못 할 때 각각 장루와 요루라는 것을 만들어 각각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
- ▶ 뇌전증 장애 : 간질이라고도 하며 뇌에 있는 수억 개의 뇌세포들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되는 장애
- ▶ 지적 장애 :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
- ▶ 자폐증 :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
- ▶ 정신 장애 :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 작성 방법

-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 통계표 구성

### 〈 장애인 등록인구 〉

(단위 : 명, %)

	청년인구	장애인 등록인구	구성비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	------	----------	-----	-------------

▶ 비율 : 장애인등록인구/청년인구\*100

### 〈 장애 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

(단위 : 명, %)

장애인 등록인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장애인 등록인구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영역

복지

자료

국민·공무원·연금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국민연금자료 공무원연금자료 사학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 공적연금 가입인구



## 자료 설명

-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관련 자료는 자격취득·변동 신고 현황, 노령, 장애, 유족연금, 일시금 청구내역 및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집계 및 재분류하여 작성
-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임.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 ▶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함.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임



## 주요 용어 설명

## 〈국민연금〉

- ▶ 가입유형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연장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작성 방법

- ▶ 통계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자료와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연계하여 작성 대상의 청년인구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자 집계. 자료 사용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 ▶ 국민연금가입인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집계표로 요청



## 통계표 구성

## 〈공적연금 가입인구〉

(단위 : 명, %)

청년인구	공적연금 가입인구				공적연금 가입비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가입자격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 명, %)

청년인구	공적연금 가입인구			국민연금 가입비율
	사업장	임의	임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 명, %)

국민연금 가입인구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가입기간별 공무원연금 가입인구〉

(단위 : 명, %)

공무원연금 가입인구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가입기간별 사학연금 가입인구〉

(단위 : 명, %)

사학연금 가입인구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영역

건강

자료

건강보험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적용인구</li> <li>•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li> <li>• 만성질환 진료현황</li> <li>• 주요 암 진료현황</li> </ul>



## 자료 설명

- ▶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기준이며,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수진 기준임
- ▶ 요양급여실적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기준으로 작성함
- ▶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체한 것이므로,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질병으로 건강보험 청구실적에 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진 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주요 용어 설명

- ▶ 요양기관 : 환자를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관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 급여비(공단부담금, 보험자부담금) :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 급여일수(진료일수), 요양 일수 :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약국 처방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 작성 방법

- ▶ 해당 자료를 통계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계표로 요청



## 통계표 구성

### 〈 건강보험 적용인구 〉

(단위 : 명, %)

적용인구	직장		공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 〈 요양급여실적 〉

(단위 : 명, 천원)

요양급여실적		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 〈 만성질환(7종) 진료인원 〉

(단위 : 명)

진료인원	진료인원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
------	------	----	------	-----	------	-----	-----

- 발췌코드 :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치주질환(K00~K01, K03~K08), 관절염(M00~M19, M22~M25), 정신질환(F), 전염병(A,B), 간질환(K70~K77)

### 〈 만성질환(7종) 연간 및 1인당 진료비 〉

(단위 : 천원)

진료인원	진료인원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
------	------	----	------	-----	------	-----	-----

- 발췌코드 :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치주질환(K00~K01, K03~K08), 관절염(M00~M19)

### 〈 주요 암(6종) 진료인원 〉

(단위 : 명)

진료인원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	----	----	----	-----	-----	-----

- 발췌코드 : 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암(C53)

### 〈 주요 암(6종) 연간 및 1인당 진료비 〉

(단위 : 천원)

진료인원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	----	----	----	-----	-----	-----

- 발췌코드 : 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암(C53)



## 2

## 주요 행정자료 서식

## 1 전입 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31.>

###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거짓으로 신고(사망자 전입신고 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 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세대 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 · 층 · 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입 사유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 교 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된 1가지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그 밖의 사유 ( )				
국외이주 사유	[ ] 거주, [ ] 가족체제, [ ] 유학, [ ] 취업, [ ] 투자, [ ] 상용(상사원), *주된 1가지 [ ] 공무, [ ] 기타(자세한 내용)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 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세대 전부 전출		[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 ]세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행정상관리)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	비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에만 해당)

※ 기존 위임장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2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 <sup>1)</sup> : _____ )					휴대전화		
가족사항	세대주 외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sup>2)</sup>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부양의무자 <sup>3)</sup>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sup>4)</sup>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거구에 한함)  
 2) 해당지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시업 해당지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주거유형 : <input type="checkbox"/> 임차 <sup>5)</sup>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sup>6)</sup> )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input type="checkbox"/> 에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급여의 <input type="checkbox"/> 에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자 활 급 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영 유 아 보 육 · 유 아 학 비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input type="checkbox"/> 아 등·청 소년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이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추가 이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input type="checkbox"/> 학용품비 <input type="checkbox"/> 생활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활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복 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활 동 지 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급여 ( <input type="checkbox"/> 신규신청 <input type="checkbox"/> 갱신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추가급여 ①인양구 ②취약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input type="checkbox"/> 긴급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노 인 복 지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사 회 서 비 스 이용권(바우처)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발달재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지원)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sup>7)</sup> ( )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II)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b>감면 및 연계신청</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 장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sup>8)</sup>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육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출생신고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 (한자)	*성별	①남 *①혼인중의 출생자 ②여 *②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간제)			
	*출생장소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인구동향조사

④ 최종 졸업학교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모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 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갯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사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② 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③ 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④ 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⑥ 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어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b>작성방법</b>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li> <li>•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li> <li>• 사망일시 : &lt;예시&gt;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li> <li>-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li> <li>• 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li> <li>•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사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li> </ul>
②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li> </ul>
③ 신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li> </ul>
④ 제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li> </ul>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⑤ 최종 졸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lt;예시&gt;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li> </ul>
<b>첨부서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li> <li>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아래 중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제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ul> </li> <li>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li> <li>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인이 동·리·동장임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동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li> <li>-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li> </ul> </li> </ol> </li> </ol> <p>※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부를 생략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li> <li>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li> <li>-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li> <li>-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li> </ul> </li> </ol> <p>※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li> </ol>	
<b>※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b>	
<p>*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li> <li>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li> <li>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li> <li>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li> </ol>	

## 5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인당사자 (신고인)	성명	한글 * (성) / (명)	㉑ 또는 서명	성명	* (성) / (명)	
	한자	(성) / (명)		성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 (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⑤ 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사항						
⑦ 증인	성명	㉑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㉑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㉑ 또는 서명	후 견 인	성명	㉑ 또는 서명
		모 성명	㉑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㉑ 또는 서명		성명	㉑ 또는 서명
		모 성명	㉑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 신고인 출석여부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⑩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인구동향조사

		년    월    일		일부터 동거		
㉒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㉓ 혼인종류	남편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아내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남편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아내 (처)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㉔ 직업	남편 (부)	① 관리직	② 전문직	아내 (처)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가사무직			⑪ 학생가사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④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분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⑤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2. 혼인당사자(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6.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분으로 하는 협의의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 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 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지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 ④ 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화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일 일"란에 그 성립(화정)일을 기재합니다.
- ⑤ 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때에는 "[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할 때에는 "[2]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⑥ 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 ⑦ 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란, ㉡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화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은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분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상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⑤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⑩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⑪ 학생·가사·무직 :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첨부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본 1부.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할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신고(중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7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8. 9.>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영문성명 <sup>1)</sup>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한글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영문 <sup>1)</sup>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b>[장애유형]</b>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장애명		입소 시설명 종목 장애명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b>[서비스 신청]</b>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 ]신청 [ ]정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b>[감면서비스 신청]</b>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b>[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b>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 개발 계획안



### 「충청남도 청년통계」 개발 계획

2018. 2.





# 「충청남도 청년통계」 개발 계획

## I 추진 개요

### 1. 추진 배경

- 2018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 선정(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선정)

#### < 표준매뉴얼 사업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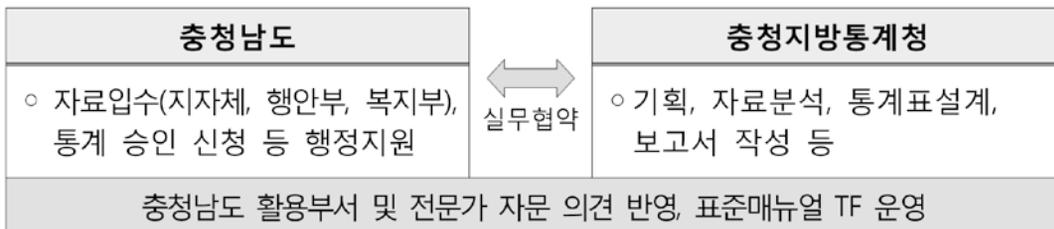
- ① 청년통계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
  - 조사항목 선정, 조사표 및 표본설계 등 통계작성 전 과정에 대한 지침 마련
- ② 「충청남도 청년통계」 개발 : 매뉴얼의 현장 검증을 위한 지역통계(승인통계) 생산
  - ※ 소요예산 : 30,889천원(충청지방통계청이 지원 추가 발생 경비는 충남도가 부담할 수 있음)

- 2017년 충청남도 18세 ~34세 청년인구 비중은 20.3%로 전국 평균(22.0%)보다 낮아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필요

#### <충청남도 인구현황>

구분	인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총인구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18~34세인구	12,113,660	12,097,601	11,952,932	11,787,407	11,587,451	11,382,088
	구성비	23.8	23.7	23.3	22.9	22.4	22.0
충남	총인구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18~34세인구	448,228	449,446	445,904	440,815	434,687	428,812
	구성비	22.1	21.9	21.6	21.2	20.7	20.3

### 2. 통계 작성 체계



### 3. 작성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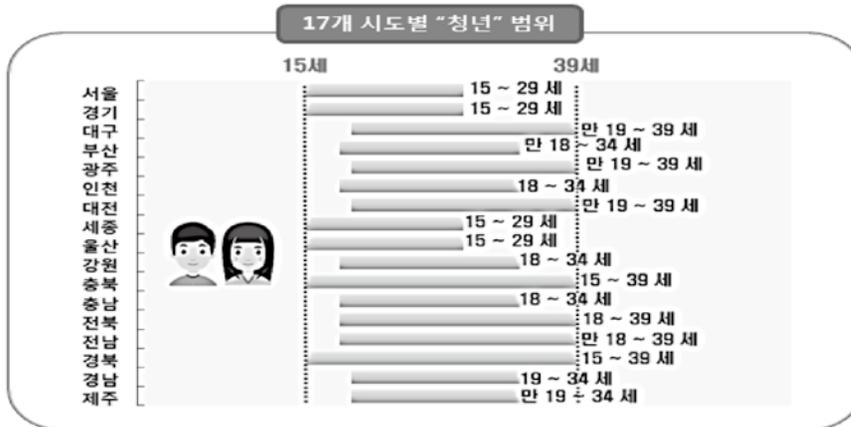
### 4. 작성 연혁 및 작성 주기

- 작성 연혁: 2018년 최초 작성
- 작성 주기: 2년

### 5. 통계 작성 기준 및 대상

- 작성 기준: 2017년 11월 1일 기준
  - ※ 단, 일부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 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 모집단: 2017년 인구총조사 기준 만 15세~39세 충청남도 인구 (1977.11.1.~2002.10.31. 출생자)
  -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제3조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충남 청년통계의 청년 연령은 18~34세이지만, 군복무, 교육 과열로 노동 분야에 늦게 편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39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하여 작성

※ 17개 시도 「청년」의 범위





## 6. 작성방법

-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행정자료 및 통계청 통계자료를 가공

## 7. 「충청남도 청년통계」 주요 생산 항목

- (인구) 인구규모, 성·연령별 인구, 읍면동별 인구분포, 세대주 현황, 혼인상태, 초혼 연령,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 전출입, 전입사유, 전입 전 거주지, 전출 후 거주지, 연령별 순이동률
- (주택 및 토지) 주택 소유수, 주택 소유유형, 성·연령별 주택 소유현황, 읍면동별 주택 소유 현황, 거주유형별 소유 현황, 1㎡당 주택 가격, 성·연령별 건축물 소유현황, 읍면동별 건축물 소유현황, 성·연령별 토지 소유, 읍면동별 토지소유, 토지 가격
- (고용) 경제활동, 구직신청자 현황, 성별·연령별 구직신청자 현황, 구직 희망 고용형태, 구직 희망 임금, 구직 희망 근무지역, 구직 희망직종의 경력 유무, 구직 신청 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가입 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실업급여 수급규모
-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종류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장애인 등록인구, 성별·연령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성·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현황,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 성별·연령별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 가입기간별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
- (건강) 건강보험 등록 현황, 가입형태별 건강보험 등록 현황, 건강보험 월평균 급여비

※ 추후 TF회의 후 항목 확정

## 8. 「충청남도 청년통계」 활용 예정 행정자료 현황

- 인구통계등록부, 재산세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료, 장애인등록자료, 공적연금, 구직자자료,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 입수 행정자료 활용 예시

구분	행정자료	보유기관	주요 항목	비고
인구	인구·가구	통계청	- 기준년도, 개인대체식별번호, 가구주대체식별번호, 생년월일, 성별, 만나이, 사망년도, 가구주관계코드, 가구유형코드, 거처번호, 법정동코드, 행정구역분류번호, 혼인상태코드, 국적코드 등 - 가구유형코드, 거처형태코드, 가구원수, 자녀수, 단독주택유형,	
재산	재산세	통계청 충청남도	[주택, 건물] - 개인정보[성명, 고유번호, 행정구역분류], 지분, 취득일자, 과세대상, 형태, 용도, 준공일자, 면적, 개별 [토지]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취득일자, 과세대상,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수급구분, 보장구분, 가구원수, 보장금액	
복지	기초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수급구분, 보장구분, 가구원수, 보장금액	
	장애인등록	충청남도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장애명칭, 장애등급, 보장구분, 보장금액	
	공적연금	국민·공무원 사학연금공단 통계청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가입구분, 취득일자, 상실일자, 급여종류, 급여액	
일자리	구직신청	고용노동부 통계청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최종학력, 희망직종, 희망직종 경력, 희망근무지역 희망고용형태, 희망임금금액, 구직신청목적	
	고용보험	통계청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고용형태,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실업급여 지급액, 중사산업코드	
	사업자등록	국세청 통계청	- 기준년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별, 등록일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조직구분, 활동구분 등	
건강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단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6자리+뒷2자리), 주소] 가입구분, 보험료 부과액, 보험 급여비, 보험 진료비 진료형태,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질병코드, 질병별 진료비	



## II 자문단 및 정책활용 협의회 구성 등

### 1. 지표 선정 및 보고서 검토 자문단 구성

구분	자문단 구성
구성	· 충청지방통계청 자문위원, 충남연구원 등
운영	· 지표 선정 및 보고서 검토 · 회의 안건에 맞게 개최 주기, 참석대상 등을 유연하게 운용

### 2. 충남 청년통계 정책활용 협의회 구성

구분	정책활용 협의회
구성	· (충청남도) 지속가능정책통계팀, 청소년팀, 청년일자리팀, 인구청년정책팀 ·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개발지원 1팀 · (전문가) 충남연구원 등
운영	· 지표 선정을 위한 정책 활용 부서 의견 수렴, 활용방안 회의 · 회의 안건에 맞게 개최 주기, 참석대상 등을 유연하게 운용

### 3. 청년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TF 참여

구분	청년통계 표준매뉴얼 TF
구성	· (지자체) 충청남도(청년통계), 광양시(청년통계) ·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충청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 관련분야 전문가 등
운영	· 2018년에 개발되는 각 지자체 청년통계를 하나의 TF로 구성하여 운영 · 회의 안건에 맞게 개최 주기, 참석대상 등을 유연하게 운용

### III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행정통계 실무협약 체결												
· 계획 및 항목 선정, 통계표 설계 - TF 운영 및 충청남도청 활용부서 의견 반영												
· 각 부처별 행정자료 입수												
· 입수 행정자료 타당성 검토 및 협의 - TF 운영 및 충청남도청 활용부서 의견 반영 -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자료 품질 보완(비매칭, 무응답 등)												
· 자료 분석 및 작성												
· 보고서 업무 협의 및 승인요청 - TF 운영 및 충청남도청 활용부서 의견 반영 -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보고서 결과 보고 및 설명회 개최												

### IV 기대효과

- (통계기반 정책수립) 충청남도 청년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 복지, 건강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양적, 질적 지표개선) 양적지표인 인구, 주택소유율 이외에 복지, 보건현황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양적·질적 지표 개선
- (예산절감)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생산 증대,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통계개발 비용 절감

#### <붙임> 행정자료 안전관리 대책



## 충남 청년통계 개발 관련 행정자료 안전 관리 대책

### □ 정보보호 (통계법에 의한 보호)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제41조(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자료 접근제한

- 관리책임자(통계책임관) : 충청남도 기획관
- 업무수행자 : 지역통계개발 담당 주무관 ※ 자료 접근권한 부여, 자료 관리

### □ 기술적 보안조치

- 1차 보안(외부유출 방지) : 외부통신망과 차단된 별도의 공간(host)에 저장
- 2차 보안(담당자 외 자료열람 불가) : 자료 비밀번호 설정

###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한

- 개인정보는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할 것이며 사용 목적이 완료된 시점에서 즉각 삭제할 계획
  - ※ 행정자료간 연계를 위해 개인정보 입수 불가피

## 4

##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를 점검표(행정통계)

통계작성단계	표준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O/X
1. 통계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에 통계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통계표설계	①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② 관련 자료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③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통계표를 반영하였는가?	
	④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율통계표를 개발하였는가?	
3. 행정자료입수	①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는가?	
	② 자료 제공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③ 원자료로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통계표작성	①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에 대해 검토 및 정비하였는가?	
	② 고유 식별자(연계키)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통계 작성용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는가?	
	③ 통계표 작성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 결과분석	①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였는가?	
	②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하였는가?	
6. 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표	①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②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③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청년통계

---

- | 발 행 | 2018년 12월
- | 발 행 인 | 통계청장 강신욱
- | 편 집 인 | 조사관리국장 김현애
- | 총괄기획 | 지역통계총괄과 조윤구, 김종록, 김삿별, 최익서
- | 공동기획 |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차진숙, 이호섭, 오영미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김태준, 임홍철, 김영미
- | 발 행 처 | 통계청
-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전 화 | 042-481-3608~9
- |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 | 발간번호 | 11-1240000-001165-01



2018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 청년통계